

총학생회 회칙



한국항공대학교

개정 기록표

번호	개정일자	개정자 (서명)	번호	개정일자	개정자 (서명)
1			16		
2			17		
3			18		
4			19		
5			20		
6			21		
7			22		
8			23		
9			24		
10			25		
11			26		
12			27		
13			28		
14			29		
15			30		

총학생회 회칙

제 1 장 총 칙

- 제1조** (명칭) 본회는 한국항공대학교 총학생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칭한다.
- 제2조** (목적) 본회는 회원의 자유롭고 민주적인 자치활동을 통하여 회원 상호간의 유대를 돈독히 함으로써 학구적 기풍을 진작시켜 대학의 자율적 발전을 도모하고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여 나아가 사회의 정의로운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제3조** (설치) 본회는 한국항공대학교 안에 둔다.
- 제4조** (기능) 본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 1과 같다.
1. 학술, 예술, 취미 및 체육활동
 2. 근로봉사, 계몽활동 및 학교주변의 화재 등 재난발생시 지원활동
 3. 기타 학생 자치활동
- 제5조** (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한국항공대학교의 재학생으로 한다.
- 제6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본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 1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1. 본회의 모든 자치활동에 참여할 권리와 각종 선거권 및 피선거권
 2. 회칙을 준수하고 회비를 납부할 의무
- 제7조** (회의구성)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학생총회,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이하 '전학대회'라 한다), 집행위원회, 운영위원회, 학(부)과 학생회, 총여학생회 등으로 구성한다.

제 2 장 학생총회

- 제8조** (구성) 학생총회는 본회의 모든 회원으로 구성한다.
- 제9조** (권한) 학생총회는 학생회칙 및 회원전체에 관련된 중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 제10조** (의장) 학생총회의 의장은 총학생회장이 맡는다.
- 제11조** (소집) 학생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1. 정기총회는 매 학기 개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총학생회장이 소집한다.
 2. 임시총회는 전학대회, 운영위원회 또는 회원전체 1/5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총학생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때는 총학생회장이 소집할 수 있다.
 3. 임시총회의 소집은 7일 전에 이를 공고한다. 다만, 전항 단서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제12조** (의결) 학생총회의 의결은 회원 1/10 이상의 참석과 참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3 장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제13조 (지위) <삭제>

제14조 (구성) ① 총학생회장, 부총학생회장 및 학부(과) 학생회장, 총여학생회장, 각 학년 대표, 각 자치단체에서 선출된 대표 등으로 구성 한다.

② <삭제>

제15조 (의장) <삭제>

제16조 (대의원 임기) <삭제>

제17호 (업무 및 권한) 전학대회는 다음과 같은 업무 및 권한을 갖는다.

1. 회칙개정
2. 학생총회의 소집요구권
3. 본회 재정에 대한 감사권
4. <삭제>
5.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제출된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의 심의승인권
6. <삭제>
7. 총학생회장의 불신임결의권
8. 집행위원회 각부 부장의 출석요구권 및 해임의결권
9. 운영위원회 출석요구권
10. <삭제>
11. <삭제>

제18조 (소집) 전학대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1. 정기전학대회는 매 학기 1회 개최한다.
2. 임시전학대회는 재적인원 5분의 1이상의 발의가 있거나 운영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의장이 이를 소집할 수 있다.
3. <삭제>

제19조 (기구설치) 전학대회는 의장 1인, 총무 1인, 서기 1인으로 상설기구로 구성하며, 의장은 총학생회장이 된다.

제20조 (의결) ① 제17조의 2,5,9항은 재적인원 과반수 이상의 참석과 출석인원 과반수 이상으로 의결한다.

② 제17조 1,3,7,8항은 재적인원 과반수 이상의 참석과 출석인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삭제>

제 4 장 총학생회장 및 부학생회장

제21조 (지위) 총학생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학생총회, 전학대회, 운영위원회 및 집행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제22조 (부학생회장) 부총학생회장은 총학생회장을 보좌하며 총학생회장 궐위시에는 그 직을 계승한다. 다만, 회장의 궐위사유가 아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기간동안 그 권한과 직무를 대행한다.

제23조 (자격) 총학생회장 및 부총학생회장의 입후보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품행이 방정하고 지도력이 있는 자
2. 4개 학기 이상 등록을 필한 자
3. 전체 학기 성적 평점평균이 성적경고 대상이 아닌 자
4. 재학기간 중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제24조 (임기)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의 임기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5조 (선출)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의 선출은 회원의 직접선거로 한다.

제26조 (업무 및 권한) 총학생회장은 다음과 같은 업무 및 권한을 갖는다.

1. 집행부 각부 부장을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2. 학생총회, 운영위원회 및 집행위원회를 소집, 그 업무를 주관한다.
3. 본회 회원의 총의를 대표하는 학생자치활동에 관계되는 사항에 대하여 학교당국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4. <삭제>
5. 총학생회장이 불신임을 받는 경우 7일 이내에 학생총회를 소집, 재신임을 물어야 한다.
6. 기타 총학생회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집행한다.

제 5 장 운영위원회

제27조 (지위) 운영위원회는 본회의 최고 운영기구이다.

제28조 (구성) 운영위원회는 총학생회장, 부총학생회장, 학(부)과 학생회장, 총여학생회장, 동아리연합회장 등으로 구성한다. 단, 학생회장단 궐위시 각 단위 전체총회를 거친 임시체계위원장 1인에게 운영위원회 자격을 부여한다.

제29조 (업무 및 권한) 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업무 및 권한을 갖는다.

1. 본회의 제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심의 조정하여 전학대회에 제출한다.
2. 본회의 예결산보고서를 심의하여 전학대회에 제출한다.
3. 본회 회비를 책정하여 전학대회에 상정한다.
4. 학생총회 및 전학대회의 소집권을 갖는다.
5. 회칙 개정안을 발의하여 전학대회에 상정한다.
6. <삭제>
7. <삭제>

제30조 (소집)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가 있다.

1. 정기회의는 매주 1회로 한다.
2. 임시회의는 총학생회장의 요구 또한 운영위원 3인 이상의 발의로 소집한다.

제31조 (의결정족수)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6 장 집행위원회

제32조 (지위) 집행위원회는 본회의 최고 집행기구이다.

제33조 (구성) ① 집행위원회는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 및 각국 국장 및 차장으로 구성된다.

② 각국 국장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국원을 둘 수 있다.

제34조 (업무 및 권한) 집행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업무 및 권한을 갖는다.

1. 운영위원회를 보좌하며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업을 집행한다.
2. 본회의 사업계획, 예산편성,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3. 제반활동의 집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부서를 둔다.
 - 가. 총무부 : 본회의 사무, 회계 등 각종 회의개최 및 일체의 사무를 관장한다.
 - 나. 학술부 : 본회의 학술활동에 관한 일체의 사무를 관장한다.
 - 다. 문예부 : 본회의 문화, 예술, 교양활동 등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관장한다.
 - 라. 섭외홍보부 : 본회의 활동에 필요한 각종 섭외 및 홍보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관장한다.
 - 마. 후생복지부 : 본회의 학생 후생복지에 관한 제반사무를 관장한다.
 - 바. 체육부 : 학생들의 체육행사, 체력향상 및 친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 7 장 학(부)과 학생회

제35조 (구성) 학부(과) 학생회는 해당 학부(과) 학생으로 구성한다.

- ① 학부(과) 학생회장은 각 학부(과)를 대표하여 운영위원이 된다.
- ② 학부(과) 학생회장은 해당 학부(과) 학생들의 직접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제36조 (자격) 학부(과) 학생회장 입후보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품행이 방정하고 지도력이 있는 자
2. 4개 학기 이상 등록을 필한 자
3. 전체 학기 성적 평점평균이 성적경고 대상이 아닌 자
4. 재학기간 중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제37조 (업무 및 권한) 학부(과) 학생회는 다음과 같은 업무 및 권한을 갖는다.

1. 각 학부(과)의 자치활동을 독자적으로 수행한다.
2. <삭제>

제38조 (회칙) 학부(과) 학생회는 총학생회 회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독자적인 회칙과 조직을 갖는다.

제 8 장 총여학생회

제39조 (구성) 총여학생회는 본교의 모든 여학생으로 구성한다.

제40조 (회장) 총학생회 회장은 과여학생회를 대표하여 운영위원이 된다.

제41조 (업무 및 권한) 총학생회는 여학생의 자치활동을 독자적으로 수행하여 자율적인 활동을 위하여 총학생회 회칙에 위배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독자적인 회칙과 조직을 갖는다.

제 9 장 학생지도위원회

제42조 (목적) 본회 및 학생들의 자율적 자치활동 능력배양을 지도하기 위하여 학생지도위원회(이하 '지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3조 (구성) 지도위원회는 교무처장, 학생처장, 각 학부(과)장, 교양학부장으로 구성한다. 의장은 학생처장이 되며 1인의 간사를 둔다.

제44조 (기능) 지도위원회는 각호 1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회칙개정 및 재정에 관한 사항
2. 본회 조직에 관한 사항
3. 예산, 결산 및 감사에 관한 사항
4. 집행부 불신임 결의에 관한 사항
5. 회비책정에 관한 사항
6. 학생자치활동의 지도육성에 관한 사항
7. 기타 필요한 사항

제45조 (심의절차) 본 회의 기구들은 제44조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시행하여야 한다.

제 10 장 재 정

제46조 (경비) ① 총학생회 경비는 회원이 납부하는 총학생회비로 충당한다.

② 총학생회비의 징수 및 관리는 학교에서 하되, 회장이 학교예산 집행절차에 따라 결재 후 집행한다.

제47조 (회계년도) ① 본 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익년 2월 28일까지로 한다.

② 전항의 회계년도는 매학기를 구분하여 학기마다 결산을 행한다.

③ 신임 집행부는 기존 사업계획을 수정 조정할 수 있다.

제48조 (편성 및 심의) 예산은 집행위원회가 총학생회의 각 기구별 사업계획을 항목별로 편성하여 제출한 것을 운영위원회가 심의 조정하며 이를 전학대회에 상정하여 전학대회에서 심의, 최종 확정한다.

제49조 (예산집행) 예산집행시에는 회비, 보조금, 찬조금 등 일체의 경비에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하며 각 기구에는 회계장부를 비치하고 일체의 경비를 기록해야 한다.

제50조 (가예산 및 경정예산) ① 예산, 결산 이전에 예산집행상 부득이한 경우가 있을 때, 또는 예산안이 총학생회 회칙이 정한 기간내에 전학대회를 통과하지 못한 경우에는 1개월간의 가예산을 인정할 수 있다.

② 예산수립 후에 생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통과 승인된 원예산에 가감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추후 이를 전학대회에서 승인받아야 한다.

제51조 (결산보고) ① 운영위원회는 결산보고서를 매학기 작성하여 전학대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학대회는 결산보고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52조 (감사) 예산의 집행은 매학기 전학대회의 감사를 받는다.

제 11 장 선 거

제53조 (선거시기) ① 총학생회장, 부총학생회장, 대의원의 선거는 11월 중에 실시한다.

② 학부(과) 학생회장, 총여학생회장 등의 선거시기는 각 기구의 회칙에 따라 실시한다.

제54조 (선거방법) 본회의 선거는 보통, 비밀, 평등, 직접선거로 한다.

제55조 (선거규정) ① 총학생회장 및 부총학생회장의 선거관리를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두되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② 기타 선거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학생회 선거규정에 의한다.

제56조 (보궐선거) ① 총학생회장, 부총학생회장 궐위시 그 잔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경우에는 궐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다만, 잔임기간이 180일 이내일 경우 전학대회에서 선발하고 학생총회에서 심의·의결한다.

② <삭제>

③ <삭제>

제 12 장 회칙개정

제57조 (발의) 회칙개정 발의 요건은 다음 각호 1과 같다.

1. 전학대회 재적인원 5분의 1 이상의 발의
2. 운영위원회의 발의
3. 회원 5분의 1 이상의 발의

제58조 (의결공포) 회칙개정 발의 시에는 전학대회 의장은 이를 즉시 공포하고 공고일로부터 10일 이후에 30일 이내에 전학대회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총장이 이를 공포한다.

제59조 (기타) 상기 회칙 이외의 사항은 총학생회 회칙에 의한다.

부 칙

1. 이 회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삭제

<별표 2> 삭제

<별표 3> 삭제